

2026. 8.

프랑스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와 저작물의 의거관계 추정 법률안 상원 통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박준우

1. 개요

2026년 4월 프랑스 상원이 인공지능 개발사업자(provider, 이하 ‘개발사업자’)의 저작물 이용(의거관계) 증명책임을 원고 저작권자로부터 피고 개발사업자에게로 전환하는 지적재산법 개정안을 채택하였고(이하 ‘의거관계 추정 개정안’), 현재 하원에서 논의 중이다.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25. 12. 12. 상원(Sénat) 발의. 로르 다르코(Laure Darcos) 상원의원 주도로 프랑스 상원에 지적재산법 개정안(제220호) 제출됨.¹⁾
- 2026. 4. 8. 상원 본회의 가결. 상원 문화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됨(T.A. 제85호).
- 2026. 4. 9. 하원(Assemblée nationale) 이송 및 ‘문화 및 교육위원회’ 회부됨(제2634호).
- 2026. 6. 2. 하원 상임위는 ‘법률안 수정 없이 단일 조항(article unique) 그대로 통과’시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제2864호, 보고자: 엠마누엘 모렐 의원)를 하원 의장실에 등록함(이하 ‘심사보고서’).²⁾

2. 개정안 내용

1) 개정안 원문

개정안 원문과 그 한국어 번역은 다음 표와 같다.

※ 프랑스 지적재산법 개정안(증명책임 전환) 한프 비교

- * 프랑스어 원본을 인공지능(제미나이)으로 영어 번역 후, 작성자 검토를 거쳐 한국어로 번역함. 한국어 문장 순서는 프랑스어 원본 순서에 맞춤.

1) <https://www.senat.fr/leg/ppl25-220.pdf>

2)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7/rapports/cion-cedu/l17b2864_rapport-fond

인공지능 개발사업자의 문화콘텐츠 이용 추정 도입에 관한 법률안*	PROPOSITION DE LOI relative à l' instauration d'une pré-somption d'utilisation des contenus culturels par les four-nisseurs d'intelligence artificielle
I. 지적재산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 L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est ainsi modifié :
1. 제1부[저작권 등] 제3권 제3편 제1장 제1절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제331-4-1조를 신설한다:	1° La section 1 du chapitre 1er du titre III du livre III de la première partie est complétée par un article L. 331-4-1 ainsi rédigé:
제331-4-1조 반증이 없는 한, 모든 민사 분쟁에서 본 법전의 의미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보호대상은,	Art. L. 331-4-1. Sauf preuve contraire, dans toute contestation en matière civile, l'œuvre ou l'objet protégé par un droit d'auteur ou par un droit voisin, au sens du présent code,
인공지능 모델 또는 시스템의 개발사업자(공급자)가 이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est présumé avoir été utilisé par le fournisseur du modèle ou du système d'intelligence artificielle,
다음과 관련된 정황, -해당 시스템의 개발이나 배포 또는 -그 시스템이 생성한 산출물이 그 이용을 개연성 있게 하는 경우	dès lors qu'un indice afférent -au développement ou au déploiement de ce système ou -au résultat généré par celui-ci rend vraisemblable cette utilisation.
[생략] II. 본조 제1항 제1호는 본법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도 적용된다.	[생략] II. Le 1° du I du présent article est applicable aux instances en cours à la date d'entrée en vigueur de la présente loi,
다만, 기판력(이미 최종 확정된 판결)이 발생한 판결/결정은 예외로 한다.	sous réserve des décisions passées en force de chose jugée.

2) 개정안 설명

① 규정 신설 위치

프랑스 지적재산법 개정안이 신설하는 규정은 저작권 침해 판단 단계 중 '의거관계 증명'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 포함 주요 국가들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침해 판단 중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 관련 규정이 없다. 그런데 프랑스의 '의거관계 추정 규정'이 신설될 위치는 저작권 보호의 '구제' 부분으로, 한국 저작권법 기준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

② 의거관계 추정 요건(원고 증명책임)

원래 의거관계 증명책임은 원고 저작권자에게 있으나, 개정안은 증명책임을 피고 개발자에게 전환하였다. 다만, 증명책임 전환 (또는 추정)이 ‘원고의 증명책임 없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원고 저작권자는 최소한 다음 둘 중 하나는 증명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이나 배포 또는 ㉡인공지능 시스템 생성물’로부터, 피고 개발자의 원고 저작물 이용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음. 원고가 위 증명에 성공하면, 피고 개발자는 ‘원고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③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또는 배포로부터 의거관계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시

‘의거관계 추정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이 요건에 대하여 다음 예를 제시했다:³⁾

- ㉠ 인공지능 모델들이 해적판 라이브러리(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의존했다는 사실.
- ㉡ 인공지능 모델에 의한 콘텐츠 암기 현상. 예를 들면, 최근 미국 연구진은 여러 생성형 인공지능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의 방대한 발췌본을 그대로 인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한 바 있음.

④ 인공지능 생성 결과물로부터 의거관계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시

‘의거관계 추정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이용(의거관계)은 ㉠ ‘~의 방식으로(à la manière de)’ 또는 ‘~의 스타일(dans le style de)’로 제작된 콘텐츠를 제시하거나, ㉡ ‘생성된 결과물(output)과 원고 저작물 간의 유사성(ressemblances)’을 증명함으로써 추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2025년 3월 말 소셜 미디어에서 대규모로 유포되었던, 인공지능 모델 Dall.E로 생성한 일본 지브리 스튜디오 스타일 이미지 사례를 언급하였다.

⑤ 적용 대상 사건

‘의거관계 추정 개정안’은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민사 사건에도 적용된다. 다만, 확정된 판결/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결론 및 시사점

원래 증명책임은 증명 사항이 자신에게 유리한 당사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의거관계는 원고 저작권자가 증명한다. 그러나 증명 자료에 대한 접근성, 전문성, 경제력 등에서 상대방이 현저하게 우월한 지위에 있다면 (또는 반대로 증명책임을 부담할 자가 현저하게 열악한 지위에 있다면), 증명책임 부담의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경험칙상 특정한 분쟁 유형에서 증명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 증명 사실 ‘존재’가 아닌 ‘부존재’를 증명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는 법적 수단이 증명책임 전환, 즉 ‘추정’이다.

3) 심사보고서, 18쪽.

EU 인공지능법과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개발사업자 등에게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였다. 인공지능법의 투명성 의무에 의존하든 저작권법에 별도의 투명성 의무를 신설하든, 투명성 의무는 ‘저작권 침해 증명’을 위한 전제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투명성 의무는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나 강제가 매우 어려운데, ‘의거관계 추정’은 투명성 의무 이행과 강제의 어려움에 대한 가성비 높은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Sénat, Proposition de loi, adoptée par le Sénat, relative à l’instauration d’une présomption d’utilisation des contenus culturels par les fournisseurs d’intelligence artificielle, Texte adopté n° 85, 8 avril 2026, Article unique.

- Assemblée nationale, Rapport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affaires culturelles et de l’éducation sur la proposition de loi, adoptée par le Sénat, relative à l’instauration d’une présomption d’utilisation des contenus culturels par les fournisseurs d’intelligence artificielle (n° 2634), par M. Emmanuel Maurel, Député, n° 2864, déposé le 2 juin 2026.